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82호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5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##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3095호, 2015. 1. 28 공포, 2015. 7. 29 시행)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‘지도사 업무제한’ 및 ‘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’ 통보 조항 삭제(안 제23조, 제24조)

나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(안 별지 18호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「정보공개-행정 입법예고」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
(전화 : 042-481-8909, Fax : 042-472-3428)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일부개정령안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별지 18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3조(업무제한) 법 제52조제3호</u> 에서 “<u>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</u>”란 <u>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. ~ 4. (생략)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u>제24조(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)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확 등의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
**[별지 1]**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서식

제 호

# 지도사자격증

성 명:

생 년 월 일:

지 도 분 야:

위 사람은      년 시행 제      회 [ ]경영지도사      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 
[ ]기술지도사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 
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기업청장

직인